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바 등) 미 제거

관 계 기 관 종로구, 도봉구

내 용

종로구, 도봉구(공원녹지과, 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관내 공원 및 산사태 위험지역 내에 수목 식재를 하고자 아래 [표 1] 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수목 식재 공사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시공사	기관명
1	●●공원 외 1개소 보수정비공사	2017.5.31.~2017.8.20.	308	Q기업	종로구
2	2016년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2016.10.27.~2017.6.20.	260	R기업	도봉구
3	2017년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2017.12.13.~2018.11.30.	549	S기업	
4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동 등 4개소)	2017.3.10.~2017.5.30.	159	T기업	

이전 공사 「조경시방서」에 따르면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시공사들은 2016. 10. 27.부터 2018. 11. 30.까지 ‘●● · ◁◁ 공원 외 1개소 보수정비공사’ 외 3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방서와 다르게 수목 뿌리분의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채 아래 [표 2] 와 같이 수목 498주를 식재 하였다.

[표 2] 수목식재 완료 현황

(단위:주)

계	●●·◁◁공원	16년 동네뒷산	17년 동네뒷산	17년 산사태예방
498	221	81	144	52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전 수목 뿌리분의 고무바 미제거에 대해 확인·점검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시공자가 수목 뿌리분의 고무바 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식재함으로써 토양 속에 분해되지 않는 고무바 등의 결속재료가 그대로 있게 되어 향후 토양환경 오염과 수목 생육환경 저해가 우려된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종로구(공원녹지과), 도봉구(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 뿌리분의 결속재료 제거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향후 시공자로 하여금 수목 뿌리분의 결속재료를 제거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도봉구청장은

수목 생육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뿌리분에 제거되지 않은 결속재료(고무바 등)를 제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